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인도적 대북지원사업</u>과 <u>협력사업</u>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대북지원사업</u>”이라 함은 「<u>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u>」 및 「<u>남북협력기금법</u>」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u>식량난 해소</u>를 위한 농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p> <p>다. <u>보건위생 상태의 개선</u> 및</p>	<p><u>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 <u>남북 인도적 사업</u>----- 적 사업----- ----- ----- ----- -----</p> <p>제2조(정의) ----- ----- -----</p> <p>1. “<u>남북 인도적 사업</u>”(이하 “<u>인도적 사업</u>”이라 한다)-----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해소</u> 및 <u>식량 생산성 강화</u>를 위한 <u>농·축·수산협력</u>-----</p> <p>다. <u>영양결핍 아동과 여성, 노</u></p>

<p><u>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u> 등을 지원하는 사업</p> <p>라. <u>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u>을 지원하는 사업</p> <p><신 설></p> <p><신 설></p> <p>마. 기타 <u>대북지원사업</u>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p> <p>2. “<u>인도적 분야 협력사업</u>”(이하 “<u>협력사업</u>”이라 한다)이라 함은 「<u>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u>」 및 「<u>남북협력기금법</u>」에 따른 인도적 <u>대북지원</u>을 위한 협력사업을 말한다.</p> <p>3. “<u>기금</u>”이라 함은 <u>대북지원사업</u> 또는 <u>협력사업</u>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p> <p>제5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u>남북협력기금</u></p>	<p>약자 ----- -----</p> <p>라. <u>필수의약품 공급,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의료시설 개선 등 보건의료 협력</u>에 관한 사업</p> <p>마. <u>깨끗한 식수 공급, 화장실 설치, 위생교육 등 식수위생 환경 개선</u>에 관한 사업</p> <p>바. <u>산림복구 및 생태계 보존 등 재난위험 경감 및 기후위기 대응</u>에 관한 사업</p> <p>사. ----- - <u>인도적 사업</u>-----</p> <p>2. ----- ----- ----- ----- ----- 목적----- -----</p> <p>3. ----- <u>인도적 사업</u>----- -----</p> <p>제5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 -----</p>
--	---

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2. (생략)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6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3. 4. (생략)

----- 인도적 사업 -----

② -----

-----.

1. 인도적 사업-----

2. (현행과 같음)

③ -----
----- 인도적 사업 -----
-----.

제6조(지원자금의 신청) -----

-----.

1. (현행과 같음)

2. 인도적사업계획서 -----

3. 4. (현행과 같음)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 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 (생략)

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7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생략)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5. -----
----- 인도적 사업 -----

6. (현행과 같음)

7. ----- 인도적 사업 -----

제7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
----- 인도적 사업 -----

-----.

1. 인도적 사업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5. 북한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6.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및 분배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 ~ 5. (생략)

④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

② -----

-----.

1. ----- 인도적 사업-----

2. ~ 5. (현행과 같음)

③-----

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 6. (생략)

⑤ 기금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연 1회에 한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각 사업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⑦ (생략)

-----.

1. ----- 인도적 사업 -----

--

2. 인도적 사업 -----

--

3. ~ 6. (현행과 같음)

④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연 3회 이내에서(이미 시행중인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제8조(지원자금의 용도) ① 지원 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같은) 제8조(지원자금의 용도) ① ----- ----- ----.
1. <u>대북지원사업</u>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1. <u>인도적 사업</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대북지원사업</u>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	3. <u>인도적 사업</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 (생략)	제9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	7. ----- ----- ----- -----.

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 <u>해당 항목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변경</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취소)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취소)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기금을 반환받거나 「 <u>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u> 」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 ----- ----- -----. ----- 「 <u>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5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제 9조에 따른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u>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 신청</u>) ① <u>대북지원사업</u> 을 위해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 <u>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 제11조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11조(<u>인도적 사업 물품의 반출 신청</u>) ① <u>인도적 사업</u> ----- ----- ----- ----- -----.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 계획서(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에 대한 소개 및 대북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추진실적 등 포함)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 맺은 합의서 1부

②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③ (생략)

제12조(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의 반출승인을 받은

-----.

1. 인도적 사업 계획서(인도적 사업-----

----- 인도적 사업 경험-----

2. 인도적 사업 -----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반출승인 신청이 필요한 인도적 사업----- 모두 갖추어야 -----

-----.

1. ----- 사업의 취지-----

----- 인도적 사업-----

2.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명성의 확인) ① 인도적 사업 -

자는 반출된 물품의 분배투명성에 대한 증빙책임을 지며,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 확인보고서 및 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 물품이 단일지역에서 분배되는 단순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통관서류 등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제13조(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의 북수방문증명서를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4. 통관서류(선하증권, 수출입증명서, 물품목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3호의 서류(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인도적 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 ① -----

----- 인도적 사업 또는 -----

발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대북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과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 -----의 요청) -----

-- 인도적 사업-----

----- 인도적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

----- 인도적 사업에 자금을 교부한 -----

-----.

제15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지원자금을 ----- 이내-----

② 지원자금을 -----

-----.

-----.

한다.

제16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①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6조(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 등) ① ----- 인도적 사업, -----

----- 인도적 사업 등 ----- 인도적 사업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반출 등 실적의 등록)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법인·단체의 반출 등 실적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는 자율적 의사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한 실적 또는 다른 기구 대상 기부 등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1항의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지원물자의 종류 및 품목
- 2. 지원 수량 또는 금액 규모
- 3. 지원시기 및 사업기간
- 4. 물자 및 금전 전달 경로
- 5. 그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을 통해 수집한 실적 정보는 해당 법인·단체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실적 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법인·단체에 대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실적 등록 여부 및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승인, 조사, 제재 또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점부여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8조(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①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② -----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

-----.

③ ----- 인도적 사업을 -----

----- 인도적 사업 또는 -----
-----.

제19조(재검토기한) -----

----- 발령한 날을 -----
-----(-

(매 3년째의 <u>7월 31일</u>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월 31일-----) ----- -----.
--	-------------------------------------